

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2020년 7월 10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5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1. 일반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6급 상당 직급으로 3년 6개월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7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p>자격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일반직 6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p>

※ 지역 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2. 기능직

직급별	자격기준
1급	<p>1.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p> <p>2.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p> <p>3.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p> <p>4.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2급	<p>1.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p> <p>2.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p> <p>3.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p> <p>4.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3급	<p>자격제한 없음</p> <p>(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기능직 2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p>

- ※ 지역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영기획부	
입안자	직위 성명	경영기획부장 이현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이태권 (390-7615)

현 행

[별표 2]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1. 일반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1. 공무원 4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5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부서장으로 5년 이상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5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6급 경력 4년 이상인 자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부서장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6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7급 경력 3년6개월 이상인 자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3년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4년 이상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급	1.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급	신규 채용	1. 자격제한 없음(필기시험)		
	경력 경쟁 채용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1년 이상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역제한 : 경기도로 제한

※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2. 기능직

직급별	자격기준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table border="1"> <tr> <td>신규 채용</td><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필기시험) </td></tr> <tr> <td>경력 경쟁 채용</td><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운전직 채용시) 5.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td></tr> </table>	신규 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필기시험) 	경력 경쟁 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운전직 채용시) 5.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규 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필기시험) 				
경력 경쟁 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운전직 채용시) 5.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역제한 : 경기도로 제한

※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2]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1. 일반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6급 상당 직급으로 3년 6개월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7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p>자격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일반직 6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p>

※ 지역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2. 기능직

직급별	자격기준
1급	<p>1.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p> <p>2.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p> <p>3.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p> <p>4.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2급	<p>1.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p> <p>2.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p> <p>3.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p> <p>4.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3급	<p>자격제한 없음</p> <p>(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기능직 2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p>

- ※ 지역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